
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

2020. 3. 3.

금 융 위 원 회

||| 목 차 |||

I .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1

II . 불법사금융 근절 7

III .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0

I.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[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 추진]

1

연체채권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

◇ 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체계下 연체채무자의 자력회복은 매우 어려움 → 연체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

① 채무·추심부담으로 재기모색보다 잠적·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

○ 연체채무자의 절반*만 채무조정제도(신복위, 개인회생·파산 등) 이용

*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 26~28만명,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14~17만명 발생

② 금융회사가 상환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금전적·심리적 부담 과도

○ 기한이익의 상실*(1~2월 연체시) 이후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소멸시효의 반복적 연장으로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

* 원금 즉시상환 촉구 +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 부과

○ 합법적인 추심연락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·가정생활 지장 및 심리불안 등 경제·심리적 고통 초래

③ 추심과정에서 고객신뢰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회수성과만 중시

○ 당초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제3자 추심(위탁·매각)이 도입되었으나, 현재 평판악화 위험이 적은 추심수단으로 주로 활용

- 추심자의 보수는 전적으로 회수성과에 연동 →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(harassing) 추심관행도 상존

○ 유인구조상 매입추심자의 과잉추심 가능성이 높지만, 1천개 이상 난립(1,054개, '19.6말)하여 체계적인 감독에 한계

-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저가매입(액면가 대비 매입가 15.1%, '19.6말 대부업 실태조사) 등을 통해 매입추심자에 유입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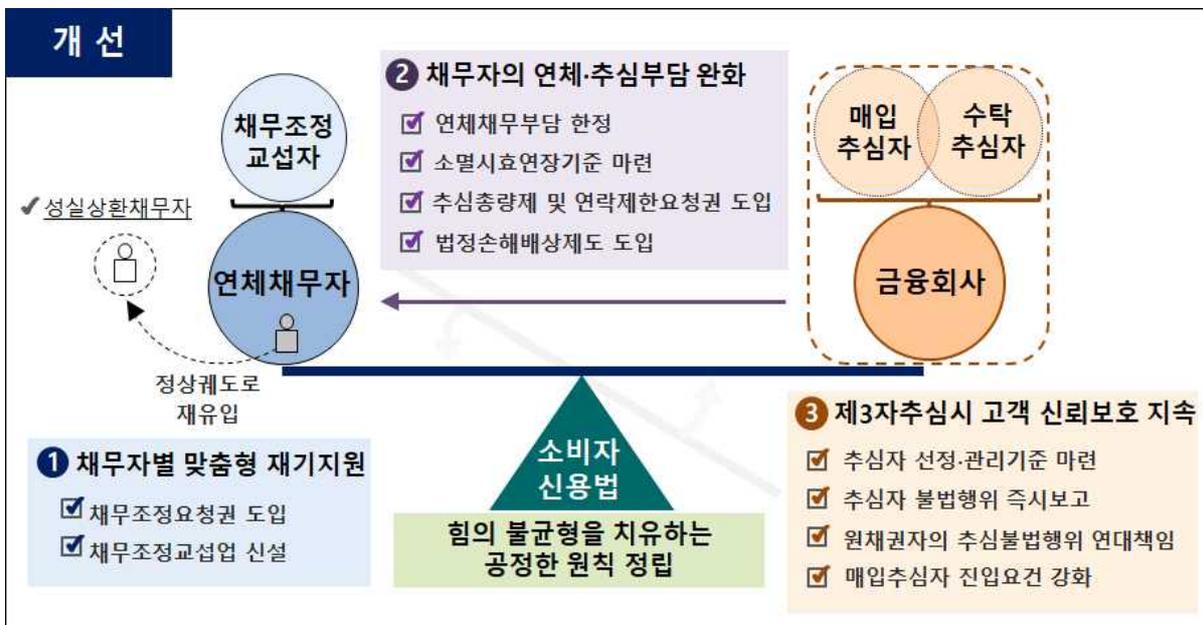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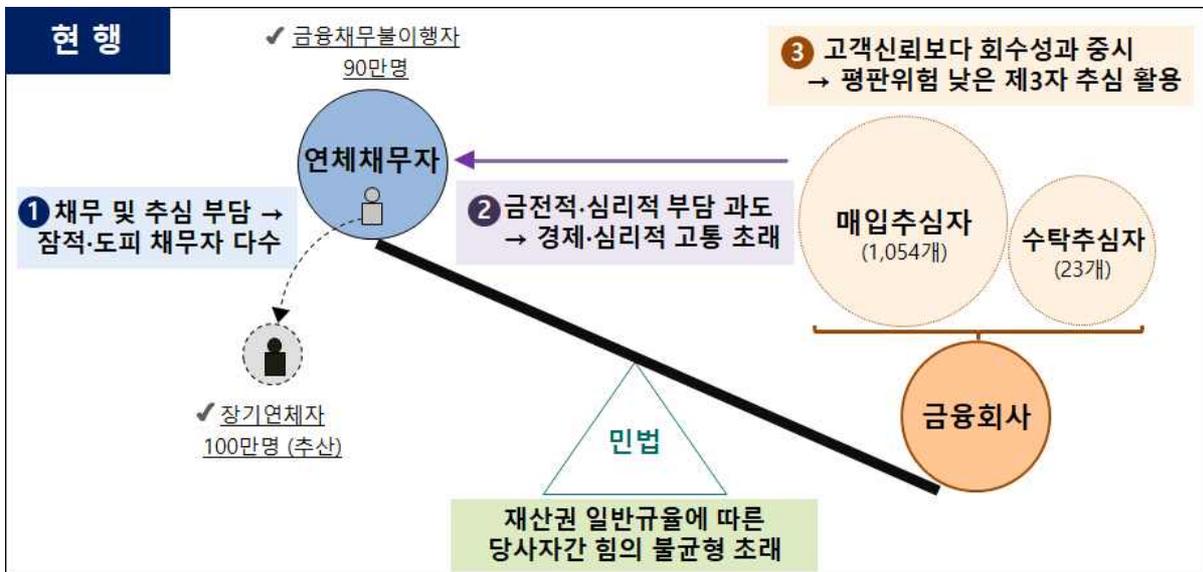
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과제

◇ 연체채무자 보호·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“유인구조 개편”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

* 그 동안의 추심질서 개선은 추심자의 과잉추심 “행위 금지”에 집중

➔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* 마련 추진

* 미국('68년), 영국('74년), 독일('90년), 호주('09년) 등 주요국은 연체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소비자신용규율 旣마련



가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

◇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
➔ 채무자가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·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'채무조정요청권' 도입

○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 가능
→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 답변 의무

○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,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 부여*

* 일정 기간내 채무자의 요청이 없거나,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요조치 후속진행 가능

□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'채무조정기준' 마련을 의무화 → 채무조정요청안 심사시 적용

○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

* [예: 국민행복기금] 재산·소득·연령·연체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(30~90%) 자동결정

○ 금융회사는 요청서 수리시 일정기간 이내 수용 여부 답변 → 채무자의 요청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수용토록 노력할 의무

□ 채무자의 경험·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'채무조정교섭업'(채무자와 계약) 도입

○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금융회사와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

○ 이해상충 방지, 설명의무, 최적대안 제시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고, 수수료 수준·수취방식 등도 엄격 제한 → 소비자피해* 예방

* 미국·유럽 등에서 금융회사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자연발생·난립 → 사후 규제강화로 대응한 경험 참고

나 채무자의 연체·추심부담 완화

◇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 ➡ 채무자의 인권과 평온한 생활 보장

- 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무한증식되는 **연체채무부담 한정**
 - **기한이익 상실**시(연체 1~2월)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*를 부과하는 관행 제한
 - * [현행] 원금 전체 → [개선]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부과
 -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하여 **법인세법상 손금**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*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
 - * 현재는 상각(손금 인정)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
 -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'**소멸시효연장기준**'*을 마련·적용
 - * [현행] 원칙 연장-예외 완성(positive) → [개선] 원칙 완성-예외 연장(negative)
-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**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 부여**
 -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'**추심총량제**' 도입(예: 1주당 7회)
 -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(직장방문, 특정시간대 연락 등)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'**연락제한요청권**' 도입 →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
 - 과잉추심 제한의 **실효성 제고**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'**법정손해배상제도**'* 도입(미국 사례: 최대 \$1,000+소송·변호사비용)
 - *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 채무자의 손해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한 추심자의 과잉추심유인 완화 유도
- **소멸시효완성채권,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,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*** 등에 대한 **추심 제한**
 - * '17.4월 시스템 개통 이전 양도된 채권 등 아직 미등록 채권 다수 존재 추정

다 제3자 추심시 고객의 신뢰보호 지속

◇ 제3자를 통해 추심(위탁·매각)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고객 신뢰 보호책임 지속 →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

- 금융회사는 제3자 추심시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
 - 가격요소 뿐 아니라 추심전략, 민원처리절차,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'추심자 선정·관리기준' 마련
 - 매입추심자의 채권 재양도시에도 매입추심자의 추심자 선정·관리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 원채권자*의 사전승인을 의무화
 - * 당초 채무자와 추심 대상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
 -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→ 관련법 위반사항 발생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
 - 수탁·매입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채권자의 관리·감독 해태시 행정제재·손해배상 등 원채권자의 법적책임 강화
-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 정비
 -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*을 금지
 - * 매입추심업 1,054개 = 대부업 겸영 647개(61%) + 추심 전업 407개(39%) ('19.6말)
 -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(현재 5억원)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(현재 10배) 등 진입·영업행위 요건 강화 검토
 - 수탁·매입추심업에 대한 규율 일원화 및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「신용정보법」상 수탁추심업을 「소비자신용법」으로 이관

가 「소비자신용법」^[가칭] 입법체계

◇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「소비자신용법」은 모집, 계약체결, 연체시 처리, 계약종료 등 대출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

□ 「대부업법」을 「소비자신용법」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

○ 현행 「대부업법」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*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

* 최고금리 제한, 대출심사, 자필서명 서면계약 체결, 대부광고 등

○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* 및 계약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

* 채무조정, 기한이익상실, 추심위탁, 채권양도, 소멸시효연장 등

나 추진일정

◇ 「소비자신용법」이 '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등 입법과정 추진

□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개선 1·2차 T/F 운영('19.3~5월, '19.10~'20.3월)

□ 「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」 발표('20년 2분기)

□ 「소비자신용법안」 마련('20년 2분기) ※ 별도 T/F 운영

□ 「소비자신용법안」 국회 제출('20년 하반기)

□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('20년 하반기) → 시행('21년 하반기)

Ⅱ. 불법사금융 근절

1

현황 및 문제점

- 불법사금융(금리상한 위반, 불법추심)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
 - 피해규모가 증가*하고 있으며, 구제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·고령층·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**
- * 불법대부 이용금액(조원, 표본실태조사): ('17) 6.8 → ('18) 7.1,
- ** 전체 피해자 중 비중(% , '17→'18) : (고령층) 26.8 → 41.1, (주부) 12.7 → 22.9
- 갈수록 수법이 음성화·지능화함에 따라 수사·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
-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등 관련 규율을 회피하면서 SNS·포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종불법영업 확산
- * (예) 휴대폰소액결제 악용대포폰 매입 등의 "내구제대출"(나를 구제하는 대출) 등
- ②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구제 절차도 기관별로 분절

2

불법사금융 근절방안

가 사전예방 및 차단

- 온라인매체(SNS·포털)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*를 부여하여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

*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정부·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확인

-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*하고,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적출·적발

* 불법광고 적발사례를 DB화한 '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' 운영

- 금감원 적발시 방심위와 협업하여 신속히 차단(Fast-track 신설)

-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 적발을 위하여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·제보 활성화를 유도

- 신고·제보시 포상금 지급 확대 및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보강

- 불법사금융의 위험성·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,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

* (예) 햇살론¹⁷('19.9월 출시) 공급규모 확대: '19년 4,000억 → '20년 8,000억

나 단속·처벌 강화

-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,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

-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(특사경) 지정을 확대*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하여 단속역량을 크게 강화

* (예) 서울·경기 →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늘리도록 지자체·검찰 등과 협의 추진

-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불법영업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

* (예)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불인정 등

다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
□ 피해구제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

- ☎1332(금감원 신고센터)로 신고하면 '한번에 해결되도록' 신고 - 구제 - 서민금융·자활지원 기관간 연계* 강화

* 금감원(신고) : 피해신고를 받아 필요서비스를 파악·연계
법률구조공단(법률구제) : 소송 등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
서민금융진흥원(자금지원·채무조정) : 맞춤형 지원상품 안내·제공

□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(1.28일 기시행)

-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* 역할을 수행하고, 소송대리 무료지원

*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가능

3

향후 추진계획

-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방안*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, 세부방안 구체화 등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「불법사금융 근절방안」 발표

* (예) 일제단속,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,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

-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하고, 기타 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

Ⅲ.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1

그동안의 노력

- 금융위는 범정부적 청년정책*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, 생활안정·취업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

* "청년정책추진단" 구성('19.7),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개선을 추진 중

① [자금공급]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¹⁾ 및 청년 전·월세 대출²⁾ 지원

- 1)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'12.6월부터 '19.1월까지 9.1만명에 3,100억원 공급
- 2) '19.5.27일 출시 이후 '20.1월까지 약 1.7만 청년가구에 8,186억원 공급

② [일자리 확충] 기업 고용촉진¹⁾ 및 청년 창업 활성화²⁾ 지원

- 1)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('19년, 약 6.7조원)
- 2) 청년창업기업 우대 신용보증,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 지원 등

③ [금융접근성 등] 청년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¹⁾ 및 금융교육 제공²⁾

- 1) 체크카드 사용실적 신용평가 반영('18.1월),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('19.5월) 등
- 2) 대학 실용금융강좌 개설 지원, 학자금대출자·군장병 금융교육 지원 등

- 다만,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, 주거 및 학자금 부담 등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,

* 실업률('19.12) : 청년실업률(15~29세) 7.3%, 전체 실업률 3.4%

- 다양한 청년지원 대책에도 불구, 청년층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

➔ 금융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제공할 필요

※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소통 열린회의('19.9~10, 국무조정실)에서 청년제안을 수렴하였으며, 금융부문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층 금융지원 방안 마련 추진

가 맞춤형 금융지원

◇ 주거·생활비·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

□ '19.5월부터 시행 중인 '청년 전월세 대출자금*' 공급 한도를 1.1조원에서 4.1조원까지 대폭 확대

* 기존 한도는 1.1조원으로, '19.5~'20.1월까지 이미 0.8조원 공급되어 한도가 거의 소진

※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만 34세 이하,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
- (대출조건) (전·월세보증금) 총 7천만원 한도, 금리 2.6% 내외
(월세자금) 월 50만원 한도(2년간 총 1,200만원), 2.4% 내외

□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*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

* (예) 주택 소유자의 입원, 요양원 입소, 자녀집으로 이사 등으로 인한 공실

○ 주금공·SH공사·서울시 협약*(20.4월 예정)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, 향후 관련법령 개정**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추진

* 공실이 된 가입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,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청년·신혼부부에게 재임대(전대)

**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 (「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 필요)

□ 대학생·구직청년의 학비·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^{youth*}를 출시 (20.1월), '20년 중 1천억원 신규 공급

※ 햇살론^{YOUTH} 개요

- (지원대상) 만 34세 이하 대학생,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, 연소득 3.5천만원 이하
- (대출조건) 1,200만원 한도, 금리 3.6%~4.5%, 최대 15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

나 창업·일자리 지원

◇ 청년층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

□ 유망스타트업에 대해 '20년중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(신보 신용보증 17조원, 기업은행 자금지원 20조원 등)

※ '19년~'23년까지 5년간 총 19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목표

< 유망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실적 및 계획('19~'23) >

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계
신용보증 (신보)	16	17	18	19	20	90
자금지원 (기은)	20	20	20	20	20	100
계	36	37	38	39	40	190

□ 혁신 창업기업 발굴·보육을 위해 **종합 창업지원 공간(마포 'FRONT 1,)**을 마련하고, 패키지 금융지원('20.6월)

○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, 자금지원, 경영 컨설팅 등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

□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'20년중 **7.6조원**(잠정, '19년 6.8조원)까지 확대

○ 자금지원이 실제 고용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기준 마련, 사업효과 측정기준 개선 등 병행 추진

[참고] 일자리 지원 관련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사업

- (산업은행)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금리우대 및 온렌딩 지원
- (기업은행)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동반성장 협약대출, 창업·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등
- (수출입은행) 일자리창출 성과에 따른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

다 금융접근성 강화

◇ 청년층 금융접근성을 저해하는 차별적 요인을 적극 발굴·해소

-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**대안적 신용평가 모델** 개발 검토
 - 서민금융 이용실적,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미래 **회복가능성(resiliency)**을 중점으로 평가
-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**취업후 5년(現 4년)까지 상환 유예 허용**, 특히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2년 추가 유예
- **효율적 학자금 채무조정**을 위해 신복위 - 장학재단간 협업* 강화
 - * 상호간 채무조정제도 연계 안내, 연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

라 금융교육 강화

◇ 대학생,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 확대

- 대학생 대상 **실용금융강좌***를 국내 110여개 대학('19년 97개)에 개설 예정
 - * 금융상품·제도, 신용관리, 생애금융설계 등 금융지식을 제공하며 수강 시 학점을 부여
- **햇살론^{youth}** 등 정책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관리, 금융사기 방지 등 **의무적 금융교육** 실시
- 학업·생계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**온라인 '재무진단 서비스'** 제공

3

향후 추진계획

- 각각의 주요과제에 대해 **최대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 실행방안** 마련 (추가과제도 지속 발굴)
-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**가급적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시행**
- 법령 개정 및 기관간 협의 필요과제는 **금년중 시행 추진**